

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조직 개편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대행 정비 (안 제10조제2항, 안 제11조제2항)
- 나. 위원회 서면심사 구체화 근거 명시 (안 제12조제1항)
- 다.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 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8. 11. ~ 9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정재훈(☎ 2133-8730)

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”를 “건설기술정책관이 맡고”로, “자로 한다”를 “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위원은 서울특별시”를 “위원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:”으로, “경험”을 “관한 경험”으로, 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촉”을 “임명 또는 위촉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그 직무를 수행”을 “직무를 수행”으로, “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”을 “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심의 할”을 “심의·의결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2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(제5조제3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제 재 기 준			포상금 지급액 (개별처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의 7퍼센트 이내)
위 반 행 위	영업 정지	과징금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-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○ 위반행위 근거 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1항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2항제3호 	8개월 6개월	1,500 ~ 24,000 1,200 ~ 18,000	1,680 이내 1,260 이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등록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(재하도급 포함) ○ 위반행위 근거 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5조제2항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2항제3호 	6개월	1,200 ~ 18,000	1,260 이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승낙 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○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○ 위반행위 근거 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2항, 제3항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2항제3호 	4개월	800 ~ 12,000	840 이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○ 위반행위 근거 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6항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1항제4호 	4개월	4,000	280 이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○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○ 위반행위 근거 조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, 제36조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1조제4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제1항제8호 	2개월	2,000	140 이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</u>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재난안전관리실장</u>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해당업무 담당국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자로</u> 한다.</p> <p>1. 당연직 <u>위원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, 기술심사담당관, 재무과장</u></p> <p>2. 위촉직 <u>위원은 건설공사 분야에 <u>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</u></u></p> <p>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<u>위촉</u>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</p> <p>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<u>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</u>한다.</p> <p>제12조(위원회 심의) ① 위원회는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 <u>위원장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<u>건설기술정책관이 맡고</u>----- ----- ----- <u>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</u>한다.</p> <p>1. ----- <u>위원: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위원:</u> ----- -- <u>관한 경험</u>----- <u>사람</u></p> <p>③ ----- --- <u>임명 또는 위촉</u>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직무를 수행</u>----- <u>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위원회 심의) ① -----</p>

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
정해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
며,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
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
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-----

---- 심의·의결할 --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
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
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
어려운 경우

2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위 변경 반영 및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로 일부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정재훈 (02-2133-8730)